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8. 12. 31.>

사업개시
 휴업
 재개업
 폐업

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법인 또는 기관명		성명(대표자)	
	영업소 소재지		전화번호	
	주소		면허·허가 · 등록번호	
준공확인일		년 월 일		
사업개시일		년 월 일		
휴업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
(휴업, 재개업, 폐업) 사유				
폐업일		년 월 일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·제27조제4항·제3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·제26조·제3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면허증·허가증 또는 등록증(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